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추가〉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6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추가 (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오세희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7. 2.

다.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 (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신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4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사업	10,402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0,539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전통시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입 및 지출규모는 6조 8,949억원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개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제19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

구 분	내 용
기금의 재원 (제20조)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023회계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당초	수정	결산
수 입	○ 자체수입	2,852,531	2,867,331	3,324,925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29,056	129,056	113,325
	▪ 기타민간이자수입	126,413	126,413	137,959
	▪ 기타재산이자수입	9,453	9,453	54,134
	▪ 기타경상이전수입	28,333	43,133	345,326
	▪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668,343	1,668,343	1,764,828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90,933	890,933	909,353
	○ 정부내부수입	3,569,974	3,569,974	3,569,974
	▪ 정부출연금	569,974	569,974	569,974
	▪ 공자기금예수금	3,000,000	3,000,000	3,000,000
	○ 여유자금회수	-	-	-
	합 계	6,422,505	6,437,305	6,894,899
지 출	○ 사업비	4,036,158	4,036,158	3,982,408
	▪ 소상공인지원용자	3,000,000	3,000,000	2,945,876
	▪ 경상사업비	1,036,158	1,036,694	1,036,532
	○ 기금운영비	62,330	62,330	62,330
	▪ 기금인건비	48,656	48,656	48,656
	▪ 기금기본경비	7,554	7,554	7,554
	▪ 기금정보화경비	6,120	6,120	6,120
	○ 정부내부지출	2,324,017	2,338,817	2,338,794
	○ 여유자금운용	-	-	511,367
	합 계	6,422,505	6,437,841*	6,894,899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이월액 536백만원 포함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음.

개별 법률에서 각 기금 등의 재원으로 복권수익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금 등이 현행법에 따른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정 당시 해당 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되어 있었음.

[복권수익금의 배분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

법률명	복권수익금 사용 명시 조항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법률명	복권수익금 사용 명시 조항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58조(녹색자금)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주택도시기금법 ²⁾ (주택도시기금)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법정배분기관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상 복권수익금 배분 근거 미규정

이에 따라 이미 소상공인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배분을 보장받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법상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기관으로

2)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복권법 제정 당시 법정배분기관이었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권기금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중복적인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함(2016. 3. 29. 개정·시행)

규정하는 경우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소상공인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복권기금을 반드시 배분받는 것은 아니나, 복권기금의 사용 용도로서 그 적합성 및 필요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음.

둘째, 소상공인³⁾은 그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2023.1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3만 개, 종사자 수는 714만명이며, 사업체당 매출액은 234백만원임. 또한, 코로나-19로 이후 일상회복이 진행되었음에도 소상공인의 부채는 증가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쟁심화(46.6%)와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등의 경영상 애로(복수응답)를 겪고 있다고 조사됨.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용⁵⁾되고 있으며, 「국가재정

3)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함.

4)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59.2%)과 유사하지만,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1,100만원 증가)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법」 6)에 따라 실시한 2022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서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존치하여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음.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명시한다면 복권수익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⁷⁾으로,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도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6)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7) 복권위원회, 2022 복권백서, 2022. 4, 309p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⁸⁾,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법정배분비율이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8) 감사원,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 5.

한편, 국회는 지난 2013년에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복권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던 복권법 개정안⁹⁾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배분비율을 축소하여 복권수익금을 필요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¹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법정배분기관 추가 시 기존 법정배분기관의 배분액 축소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다양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법률간 상충 문제에 있어서도 소상공인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조성 재원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법정배분제도)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법정배분

9)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추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 중 의무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8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의안번호 제1902031호,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10) 제21대 국회에서 '법정배분기관 추가' 관련 복권법 개정안 총 8개 발의

의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법정배분대상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법률간 부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¹¹⁾¹²⁾

11) 다만,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 -----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19조에 따른 <u>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3